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숨어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아십니까?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아십니까?

직무발명보상제도와 도입 및 보상우수기업 인증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 내지 제19조 등〉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종업원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더 많은 **우수발명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등의 **선진 기업에서는 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핵심기술개발과 우수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종업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란,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수행 중 개발한 발명을 회사명으로 출원하고 **발명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승진 등 비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발명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한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세액공제, 소득세 비과세 및 각종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에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절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및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담아 제공해 드리니, 각 기업에서 기업조직, 기업형태, 기업 상황에 맞도록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수정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무발명이란?

-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의 중요성?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기술 축척과 이윤창출**로 인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어떻게 도입 하나요?

- **기업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하면 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변리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찾아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설명회」**를 해드립니다.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5)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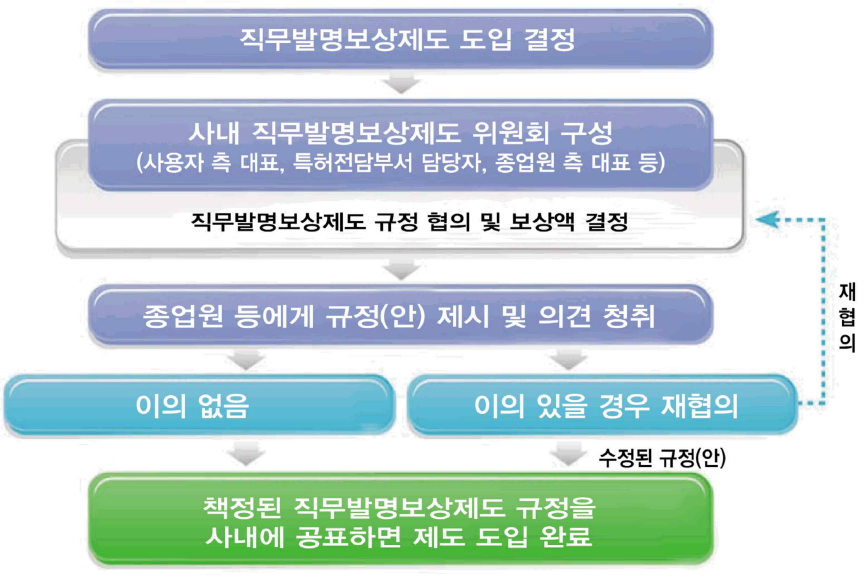

정당한 보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 **"정당한 보상"**은 따로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의하여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 등을 정하면 됩니다.
  - 금전적 보상 : 임금이외에 성과에 따라서 금전지급을 하는 보상으로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
  - 비금전적 보상 : 승진보상, Fellowship제도, 인사고과, 안식년제도, 국내외 연수제도, 학위취득 지원제도, 명예부여(표창, 현수막, 사내게시 등) 등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절차는?

- **신청자격**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 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4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이상**

-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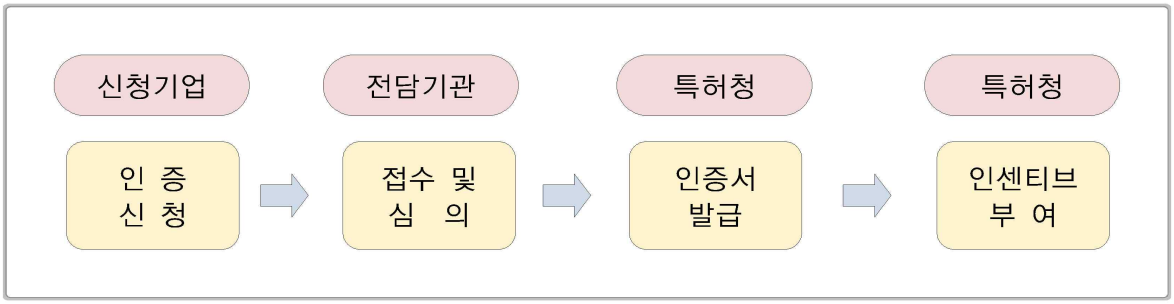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특허청)**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 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 향후 법개정 완료후 특허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예정('13년 하반기 이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자는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기업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혜택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효과가 있나요?

〈'12년 직무발명 운영 우수기업 사례〉

- **(주)네오위즈 게임즈** :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사내 발명 경진대회, 특허 교육을 실시함. 그 결과 제도 도입 전 **24건**에 불과하던 특허·디자인 출원이 '10년 **98건**, '11년에 **31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곧 회사의 매출액이 '09년 **2,772억원에서** '10년 4,301억원, '11년 **6,677억원으로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안내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양식포함)은 직무발명 홈페이지(http://employeeinvention.net) 및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공람 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모델규정(예시)

〈 직무발명보상규정 활용 시 수정하여 사용할 내용 예시 〉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모델규정(예시)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규정

20○○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직원 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허관리전담부서*”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권리의 승계) ① 회사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업원등이 종업원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종업원등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회사가 승계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의 통지

제 4 조 (발명의 신고) ① 종업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을 거쳐 특허관리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양도증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발명의 내용 설명서
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행기술 조사서(국내출원 이외의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심의 및 승계여부의 통지)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발명평가기준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승계시점 등) ①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 7 조 (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관리전담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한 발명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발명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 8 조 (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 3 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9 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임직원 및 *소속부서장*, 종업원 대표 중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출원(PCT국제출원 또는 각국 해외출원 포함), 등록 여부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발명의 발명자인 경우, 그 위원은 그 발명에 관한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3조 (출원 등) ①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발명의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 그 사실을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발명자와 *소속 부서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비용부담)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 외부로부터 연구비 등 비용을 지원받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의 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5 장 보 상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4. *출원유보보상금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취하·포기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공동발명자의 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그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 (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및 제2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0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손해배상) 발명자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발명자는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퇴직 등 후의 취급) 종업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부터 종업원등의 신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된 권리로 본다.

[별표 1] 발명평가기준

평가요소(점수)	평가기준(점수)			
기술성(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 높음(20)
실시가능성(20)	실시가능성 낮음 (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 (10)	즉시 실시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시설 필요 (15)	즉시 실시 가능 (20)
독창성(20)	직무상 당연히 착상 가능 (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 (10)	다른 발명을 독창적으로 개량·고안 (15)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 (20)
경제적가치(20)	연간 순수익 1,000만원 미만 (5)	연간 순수익이 5,000만원 미만 (10)	연간 순수익이 1억원 미만 (15)	연간순수익이 1억원 이상 (20)
독점성(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 가능(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 (6)	완전한 독점 가능 (10)	
기술의수명(10)	1년 미만 (3)	5년 미만 (6)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1. 평가점수의 합계가 45점 이상인 경우 : 승계 및 국내출원
2.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인 경우 : 승계 및 PCT국제출원(또는 각국 해외출원)

○○주식회사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제정 20○○. ○○.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출원보상금) 회사는 각 직무발명의 출원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원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　　허 : 00만원*
2. *실용신안 : 00만원*
3. *디 자 인 : 00만원*

제 3 조 (등록보상금) ① 회사는 직무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각 권리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　허　권 : 00만원*
2. *실용신안권 : 00만원*
3. *디자인권 : 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조 *(실시·처분보상금) ① 회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처분보상금은 당해 발명의 실시·처분으로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동안 계속 지급하되, 매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출원유보보상금) 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을 유보하거나 출원을 취하·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각 보상금의 합계액을 출원유보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보상금의 조정 및 비금전적 보상) 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직무발명의 경위와 내용,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실시·처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승진·승급·연수 등의 비금전적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20○○. ○○. ○○.)

이 세칙은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시·처분보상금 산정기준(예)

구분	산정기준	보상금 산정
회사자기(직접) 실시	순이익 1,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 30%
	순이익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기준금액 × 20% + 100만원
	순이익 5,000만원 초과	기준금액 × 10% + 200만원
양도 또는 실시허여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1,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30%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 + 300만원
	양도금액 또는 실시료 수입액 5,000만원 초과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5,000만원) × 10% + 1,100만원

1. 순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순이익 = (총판매량 × 판매단가) - (제조원가 + 영업경비)
2. 기준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기준금액 = 순이익 × 이용률(당해 제품에서 직무발명이 이용되는 비율)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자	직위 :
	성명 : (인)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속	전화번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관련연구과제 및 자금지원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 희망국				
발명의 공개 여부 및 계획	□ 논문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사본]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자유발명	
발명의 현단계	①아이디어단계 ②연구개발진행중 ③연구개발완료 ④시제품제작중 ⑤시제품 테스트결과 기술실현성 입증			

사업화를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 여부	□ YES	□ NO
사업화 가능분야(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1.	2.
연구노트의 관리여부 및 소재	□ YES	□ NO
본 발명과 관련된 특허		
(특허, 논문, 시장정보) 키워드		

위의 발명을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대표)자 : (인)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table>
<tr><td colspan="7">양 도 증 (지분 표시)</td></tr>
<tr><td>발 명 의
명 칭</td><td colspan="6"></td></tr>
<tr><td>출원번호
(등록번호)</td><td colspan="5"></td><td>지분율</td></tr>
<tr><td rowspan="12">양 도 인</td><td>성 명</td><td>(인)</td><td>법정생년월일</td><td colspan="2"></td><td row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인)</td><td>법정생년월일</td><td colspan="2"></td><td row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인)</td><td>법정생년월일</td><td colspan="2"></td><td row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인)</td><td>법정생년월일</td><td colspan="2"></td><td row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인)</td><td>법정생년월일</td><td colspan="2"></td><td row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기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양 수 인</td><td>성 명</td><td colspan="2">○○주식회사</td><td>대표이사</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직무발명규정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양도합니다.

년 월 일

○ ○ 주 식 회 사 귀중</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발 명 설 명 서(명세서) – 1	
1. 발명의 명칭 (한글, 영문)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3.2 그 분야 종래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3.3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h colspan="2">발 명 설 명 서(명세서) - 2</th></tr>
<tr><td rowspan="2">3.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td><td>【발명의 구성】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나) 기능 및 작용

다) 실시예</td></tr>
<tr><td>【발명의 효과】</td></tr>
<tr><td>4. 특허청구범위</td><td>4.1 청구항1

4.2 청구항2

4.3 청구항3</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선행기술 조사서

제출자(발명자)		접수번호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1. 선행기술과의 대비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본 발명 대비 신규성 (어떤 점이 새로운가?)	본 발명 대비 진보성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기술 요약	참고문헌과 비교시 본발명의 특징

[별지 제5호 서식]

통지일자	
수 령 자	직위 :
	성명 : (인)

심사결과 통지서

문서(접수)번호	
수 신 (발 명 자)	
발 명 의 명 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지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5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직무발명 여부	
2. 회사의 승계 여부	
3. 특허성의 등급결정	
4. 국내외 출원여부	
5. 출원시 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법정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접 수 일 자		20 . . .	접 수 번 호	
발명의 명칭				

[신청이유]

1. 제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제15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기 본인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의거 20 년 월 일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증거서류**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문 서 번 호	
수 신	
발명의 명칭	
제 목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의신청결과 통지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결 정 사 항

1. 신청 이유(요약)	

2. 결정 내용

20 년 월 일

○○주식회사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출원 통지서

문 서 번 호			
수 신			
발명의 명칭			
발 명 자			
○○주식회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규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발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출원여부 등을 통지합니다.			
권 리 내 용			
출 원 여 부			
출 원 일 자		출 원 번 호	
미출원 이유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인)			
첨부 : 출원명세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숨어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아십니까?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45

특 허 청 : 042-481-8626